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번호	004577
등록번호	110321-0045772
명칭	사단법인 국제금융소비자학회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다산경제관 516호(명륜3가, 성균관대학교)

목적

본 학회는 비영리기관으로서 학회 회원들의 범세계적 금융소비자에 대한 조사, 연구와 기타 학술활동을 촉진 및 개발하여 글로벌 금융소비자관련 교육, 법제, 모범사례, 감독, 정책의 선진화를 도모하여 글로벌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지와 기타 도서 발간
1. 학술대회 개최
1. 그 밖의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최미수 ~~670508~~*****

2026년 02월 21일 중임 2026년 03월 19일 등기

이사 이흥무 601208***** 인천광역시 서구 오동로 32, 202동 902호(왕길동, 검단자이2단지)

대표권제한규정 이흥무 이사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2023년 02월 21일 취임 2023년 05월 03일 등기

이사 이흥무 ~~601208~~*****

2026년 02월 21일 중임 및 대표직사임 2026년 03월 19일 등기

이사 정홍주 ~~60260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0길 112, 201호(반포동, 현대하이츠빌라)

대표권제한규정 이사 정홍주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2026년 02월 21일 취임 2026년 03월 19일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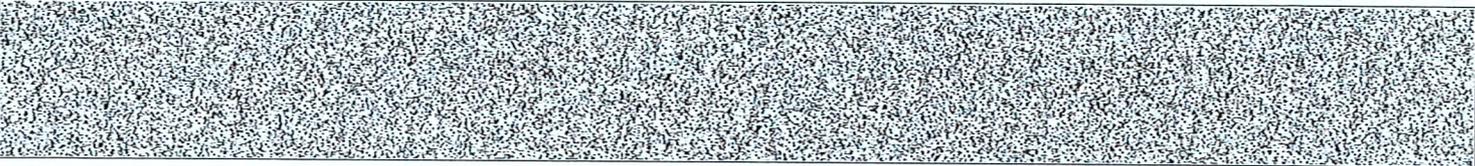
이사 조만 ~~670502~~*****

2026년 02월 21일 취임 2026년 03월 19일 등기

기타사항

1. 자산의 총액
금4,913,729원
1. 출자의 방법
 1. 회비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 지원금
 1. 찬조금
 1. 기타 수입금
1. 설립인가연월일
2015년 9월 1일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등기번호	004577
------	--------

법인성립연월일	2015년 09월 23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5년 09월 23일 등기
-------------------------	------------------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 발행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6년 03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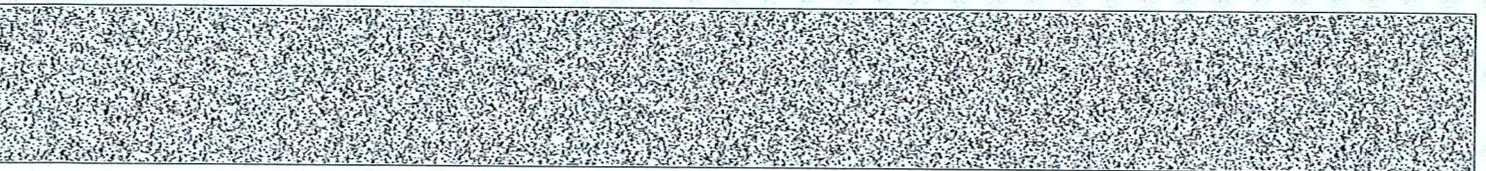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20113132001070213100612007271504BOTOM10213001111C 2

발급확인번호 5779-ALPM-NPXT

발행일 2026/03/27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고유번호 : 144-82-01324

단체명 : 사단법인 국제금융소비자학회

대표자(대표유형) : 정홍주

법인등록번호 : 110321-004577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516호(명륜3가, 다산경제관)

발급사유 : 정정

(유의사항)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지 않으며, 「민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를 제출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 등의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03월 27일

종로세무서장

